

“일본의 외국인자(외국인) 법제의 현상과 과제”의 연재 기획 취지

한국인 연구자 포럼

(<http://ksfi.jp>)

지난 5월 12일 일본 경제신문 조간은 일본 정부가 전국 6개 지역의 국가 전략 특별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을 확대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1면에 보도했다. 올해 들어서 “기능실습제도”를 확충하여 수용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전문적, 기술적 분야 중 특히 우수한 자”(고도 인재)의 수용뿐만 아니라 그 외 분야의 노동자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문호가 개방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일본이 인구 감소기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우수한 기능, 지식 노동의 획득 경쟁이 배경에 있으나, “고도 인재는 좋지만, 단순 노동은 사절”이라는 종래 외국인 수용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아직까지 일본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경에서 입국 기준을 조절함으로써 희망하는 인재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2009년에 대폭 개정되어 2011년 7월 9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입국 관리법(이하 2011년 입관법)에는 매우 단서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재류제도에 기반한 재류의 “안정화”를 위한 시책이 포함되어, 연수/기능실습제도나 일본 혈통을 가진 사람(닛케이진)의 수용을 통한 단순 노동자의 뒷문으로의 수용에 어느 정도는 수정이 가해졌으나, 여전히 “출입국 관리 정책”으로써의 기초가 유지되고 있어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과제가 많고 미온적인 것에 머물고 있다. (“특집 일본 이민 정책으로의 전환점?— 2009년 입관법 개정에 관해서” “법률시보” 2012년 11월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세례 하에서 2번의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도 21세기에 들어서, 총무청이나 각종 NGO등이 다문화 공생 사회의 추진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일본 사회나 대부분의 일본인은 여전히 외국인을 일본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이 아닌, 사회의 화합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위험분자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더불어, 근년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가 상징하는 우익 네티즌들의 xenophobia(외국인 혐오)의 출현은 일본 사회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하겠다. 그러 면에서 보면 일본(사회)이 세계 각국의 해외 인재 획득 경쟁에 있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경쟁력(유입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본 포럼에서는 일본이 “필요한” 외국인을 불러드려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드리면서 진정으로 열린 풍부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외국인 수용 법제와 정책의 현실을 점검하여 그 과제를 정리하는 것이 급무라고 생각하여 “재일 코리안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들과 함께 내외의 연구자, 실무자의 협력을 얻어 “일본의 외국인자(외국인) 법제의 현상과 과제”에 대한 연재를 기획했다.

“일본의 외국적자(외국인) 법제의 현상과 과제”(확정)

1. 일본의 외국적자(외국인) 법제의 개략 (유혁수 요코하마국립대학, 은용기 변호사)
2. 이민 통합 정책 지수의 EU/미국/한국과의 비교에서 보는 일본의 외국인 법제의 과제 (곤도 아츠시 메이조 대학)
3. 국제 비교 속의 일본의 외국인 법제 (1) : EU (사토 준이치 오사카 산업 대학)
4. 국제 비교 속의 일본의 외국인 법제 (2) : 한국 (김철민 변호사)
5. 2012년 입관법의 개요와 문제점 (세키 소스케)
-새로운 재류 관리제도를 중심으로-
6. 인종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신혜봉 아오야마가쿠인대학)
7. “당연의 법리”, “상정의 법리”의 시대 적합성 (유혁수)
8. 일본의 난민 수용의 현상과 문제점 (고마이 치에)
9. 양계 혈통주의의 도입과 복수 국적(이중국적) (은용기)
10. 일본의 외국인의 교육에 대해서 (1) -외국인학교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나카지마 토모코 풀학원대학 명예교수)
11. 일본의 외국인의 교육에 대해서 (2) -공립학교의 외국인 교원이라는 “문제”- (나카지마 토모코 풀학원대학 명예교수)
12. 외국인 노동자 수용의 현상과 문제점 (이부스키 쇼이치 변호사)
13. 외국인 지방참정권의 미래 (히구치 나오토 도쿠시마 대학)
14. 헤이트 스피치 규제 입법의 도입 가능성 (하라다 변호사)
15. 다문화 공생 사회 실현의 가능성과 과제 (이수임 류고쿠대학)
16. 헌법학에서 본 일본의 외국인 법제의 전망 (미야지 모토이 메이지가쿠인대학)